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329호 2021. 11. 4.(목)

선 람	기 관 의 장

조 례

- 예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보례(예천군 조례 제2459호)
- 예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460호)
- 예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461호)

훈 령

- 예천군 통합방위실무위원회 및 지원본부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예천군 훈령 제434호)

공 고

- 예천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1-1284호)
- 예천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1-1290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전화 650-6066)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1월 4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459호

예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종량제봉투”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로, “지정된”을 “군수 또는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하는”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100리터”를 “75리터”로 한다.

제11조제4항 전단 중 “수 있다”를 “수 있으며, 클린예천 만들기를 위하여 지역 환경단체 등과 국토대청결 활동을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이장”을 “골목길 청소의 날에는 이장의 신청, 국토대청결 활동 시에는 추진주체”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제 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

반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각종 사회재난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대규모 행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다량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야 하는 경우
4. 소각·매립 등 처리시설의 운영상황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5. 기계적 수거장치 부착차량(자동상차장치 부착차량, 진공흡입청소차량, 분집흡입차량, 집게차량 등)으로 작업하는 경우
6. 적재중량 1톤 이하의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7. 그 밖의 폐기물의 종류, 작업환경,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2 및 별표 8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종량제봉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된 종량제봉투는 그 잔량이 소진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별표 2】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2조 및 제4조 관련)

품목	세부품목	배출요령
가. 골판지류	○ 골판지 상자 등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판,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야외 별도 보관 장소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나. 골판지외 종이류	○ 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 제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쥬스팩 등
	○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 책자, 노트, 전단지 등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 종이컵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품 목	세 부 품 목	배 출 요 령
	○ 기타 종이류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다. 유리병	○ 음료수병, 기타 병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꽂초 등 이물질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라. 금속캔	○ 음료·주류캔, 식료품캔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꽂초 등 이물질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 알루미늄 호일은 종량제봉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품 목	세 부 품 목	배 출 요 령
	○ 기타캔류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락카, 페인트통 등)는 특수규격마대 등 자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마. 무색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 이트(PET)병	○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 T)병(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바. 합성수지 용기· 트레이류	○ PVC, PE, PP, PS, P SP 재질 등의 용기· 트레이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들을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행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 비해당 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시대, 유모차 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자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품 목	세 부 품 목	배 출 요 령
사. 합성수지 비닐류	○ 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질을 제거하여 배출 • 훔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cm²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ml 또는 30g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 비해당 품목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 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아. 발포 합성수지	○ 스티로폼 완충재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해당품목 :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비해당 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 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품목	세부 품목	배출요령
자. 의류 및 원 단류	○ 면의류 ○ 기타 의류 ○ 식물성 섬유(면, 마 등) ○ 동물성 섬유(울, 모직 등) ○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 ○ 기타 합성섬유류	• 군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폐의류 전용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문전수거 지역 등에서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대문 앞 배출
차. 전지류	○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 · 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 전지 · 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	•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지정된 전지류 수거일 · 장소에 배출
가. 형광등	○ 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 형광등 분리배출용기에 배출

【별표 8】

종량제봉투 및 매립용 봉투 판매가격(제12조 관련)

구 분	용 량 별 (L)	판매소 공급가격(원)	판매소 이윤(원)	판매가격(원)
일반용·재사용 종량제봉투, 매립용 봉투	5	74	6	80
일반용·재사용 종량제봉투, 매립용 봉투	10	140	10	150
일반용·재사용 종량제봉투, 매립용 봉투	20	279	21	300
일반용 종량제봉투	50	670	50	720
일반용 종량제봉투	75	1,005	75	1,080

◇개정이유

폐기물 관계법령 및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 규정에 맞게 하고, 클린예천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용 봉투의 지급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 가. 생활폐기물은 군수 또는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배출(제4조)
- 나. 종량제봉투의 용량 중 100리터 삭제 및 75리터 신설(제9조)
- 다. 공공용봉투의 지급범위 명확히 규정(제11조)
- 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예외 사유 마련(제18조의2)
- 마.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변경(별표 2)
- 바. 종량제봉투 및 매립용 봉투 판매가격 중 일반용 종량제봉투 100리터 삭제 및 75리터 신설(별표 8)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1월 4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460호

예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5조, 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 및 제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항토예비군”을 “지역예비군”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작전장교”를 “작전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동원장교”를 “동원과장”으로 한다.

1. 예천군의회 의장

2. 예천경찰서장
3. 예천교육지원청 교육장
4. 육군제3260부대2대대장
5. 국가정보원 예천담당관
6. 예천소방서장
7. 재향군인회예천지부장
8. 경북북부보훈지청장
9. 군사안보지원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종합상황실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
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 정부기능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명부터 7명까지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통합방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군부대 직제 조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불필요한 인용 조문 삭제(제1조)

○ 「통합방위법」 제17조 삭제

나. 「예비군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제2조)

○ “항토예비군”을 “지역예비군”으로 변경

다.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명칭 정비 및 위원 추가(제3조)

조례 조문	현 행	개 정
제3조제2항제1호	군의회 의장	예천군의회 의장
제3조제2항제2호	경찰서장	예천경찰서장
제3조제2항제3호	교육장	예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제3조제2항제4호	육군 부대장	육군제3260부대2대대장
제3조제2항제5호	국가정보원 관계자	국가정보원 예천담당관
제3조제2항제6호	지방소방관서의 장	예천소방서장
제3조제2항제7호	지역재향군인회장	재향군인회예천지부장
제3조제2항제8호	보훈지청장	경북북부보훈지청장
제3조제2항제9호		군사안보지원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제3조제3항제2호	작전장교	작전과장
제3조제3항제3호	동원장교	동원과장

라. 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 명칭 변경(제6조)

○ “건설·수송·장비지원반”을 “산업·수송·장비 동원지원반”으로 변경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1월 4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461호

예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농기계 취득금액 기준 임대료(단기임대)(제9조 관련)

(단위 : 원/일)

농기계 구입금액	임대료	비 고
100만원 미만	9,000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1,000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3,000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7,000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20,000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24,000	
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28,000	
7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32,000	
8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35,000	
9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40,000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	56,000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73,000	
2,0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	94,000	
2,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111,000	
3,000만원 이상 3,500만원 미만	136,000	
3,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158,000	
4,000만원 이상 4,500만원 미만	166,000	
5,000만원 이상	179,000	

◇개정이유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369호)의 개정에 따라 농기계 임대사업 시행기준을 반영하여 우리군의 농기계 임대료 산정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농기계 임대료 변경(별표 2)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및 별표 1의2의 기준에 의하여 농기계 임대료 변경

예천군 통합방위실무위원회 및 지원본부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1년 11월 4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훈령 제434호

예천군 통합방위실무위원회 및 지원본부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예천군 통합방위실무위원회 및 지원본부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작전장교 및 동원장교”를 “작전과장 및 동원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작전장교”를 “작전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산업·건설·수송지원반”을 “산업·수송·장비 동원지원반”으로 한다.

제10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산업·수송·장비 동원지원반(장)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통합방위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군부대 직제 조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통합방위실무위원회 및 지원본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실무위원회 위원 명칭 변경(제5조)

- 관할 육군부대 “작전장교 및 동원장교”를 “작전과장 및 동원과장”으로 변경

나. 지원본부의 합동상황실장 및 종합상황실 지원반 명칭 변경(제9조)

- 합동상황실장 중 관할 육군부대 “작전장교”를 “작전과장”으로 변경
- 종합상황실의 지원반 중 “산업·건설·수송지원반”을 “산업·수송·장비 동원지원반”으로 변경

다. 지원반(장) 명칭 변경(제10조)

- “산업·수송·장비지원반(장)”을 “산업·수송·장비 동원지원반(장)”으로 변경

예천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4일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현행 : 예천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 개정 : 예천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나. 상위법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2조, 제3조, 제4조 및 제15조)

○ 현행 : 도시림, 생활림

○ 개정 : 도시숲, 생활숲

다. 가로수사업 승인신청서 서식 변경(안 별지 제1호서식)

라. 가로수사업 승인서 서식 신설(안 별지 제2호서식)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조,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마. 입법예고 결과 :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평가 :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산림녹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jeansnwhite2@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산림녹지과

3) 팩스 : 054-650-631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산림녹지과(전화 : 054-650-631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 법 예 고 사 항 에 대 한 의 견 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예천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예천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숲등”이란 도시숲·생활숲·가로수를 말한다.
2. “도시숲”이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3. “생활숲”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4. “가로수”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목을 말한다.

제3조(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6조에 따라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제4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의 제목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를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

20조의2”를 “법 제13조제1항”으로, “도시림의”를 “도시숲등의”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도시림등”을 각각 “도시숲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산림경영담당”을 “공원녹지팀장”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가로수 조성협의 등)”을 “(가로수의 조성·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제2항”을 “법 제12조”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법 제21조제1항”을 “법 제12조제2항”으로, “식재·이식·제거”를 “심고 가꾸기· 옮겨심기· 제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리청은 승인신청 내용이 관련 법령, 조례, 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관리청은 제3항에 따라 가로수 사업을 승인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원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가로수 조성·관리대장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제15조의 제목 “(도시림의 조성 및 관리지역)”을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조제4호에 의한 도시림 조성·관리 지역은 예천읍으로 하며 대상은”을 “도시숲등 조성·관리 지역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흑응산”을 “흑응산, 범우리공원”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른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및 위원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및 위원으로 본다.

【별표 2】

원인자 부담금의 산정기준(제10조제8항 관련)

1. 옮겨심기를 원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옮겨 심는 경우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 원인자가 옮겨 심는 경우는 하자담보금 예치

나. 관리청에서 옮겨 심는 경우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다. 원인자가 설계하였을 경우 관리청의 사전 승인

2. 가지치기, 제거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가지치기, 제거하는 경우 : 관리청의 사전 승인 후 시행

나. 관리청이 가지치기, 제거하는 경우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3. 기타사항

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원가계산 산정 기준 적용

나. 수목비 등 자재비 : 가격정보지(조달청) 가격적용,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물가정보 및 물가자료 등 시중 가격정보지를 적용

다. 인건비 : 대한건설협회가 조사하여 발표하는 공사부문 노임단가

라. 인건비 요율 적용기준 : 건설연구원에서 발행한 건설공사 표준품셈(조경공사) 적용

마.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산정기준 : 조달청에서 정하여 발표하는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의함

바. 예치금 납부방법 : 20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예치 가능

사. 담보예치금의 환불 등 : 하자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예치 받은 담보금을 환불

아. 원인자가 원상 복구하는 경우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별표 3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업체가 대행

※ 원상복구는 시행령 별표 3의 산림기술자의 종류, 자격 요건 및 업무 범위에서 규정한 자가 시행하고, 이에 대한 복구확인서 및 하자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서류(보증보험증권)를 제출하였을 경우 부담금 납입을 생략할 수 있음

가로수사업(심고 가꾸기 · 옮겨심기 · 제거 · 가지치기 등)승인 신청서						
신청인	성 명(명칭)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사 업 대 상	가로수 위치					
	수 종		규격	수 고 : 흉고직경 : 근원직경 :	수량	본
사 유						
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부담금	금 액	금 원정()				
	납부기간					
「예천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예천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사진, 4. 보 · 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						

		[] 심고 가꾸기			
		[] 옮겨심기			
		[] 제 거		승인서	
		[] 가지치기			
신청인	성명(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연락처
사업대상	가로수 위치				
	수종		규격	수고 : 흉고직경 : 근원직경 :	수량 본
사유					
작업방법					
작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일간)			
승인조건					
부담금	금액	금 원정()			
	납부기간				
「예천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예 천 군 수 직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예천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u>	<u>예천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산림자 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률</u>」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1조(목적) ----- 「<u>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률</u>」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u>도시림등</u>”이란 도시림·생활 림·가로수를 말한다. 2. “<u>가로수</u>”란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 역에 심는 수목을 말한다. 가. 「<u>도로법</u>」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는 제외) 나. 「<u>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u>」 제2조 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 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u>도시숲등</u>”이란 도시숲·생 활숲·가로수를 말한다. 2. “<u>도시숲</u>”이란 「<u>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u>」 (이하 “<u>법</u>”이라 한다) 제2조제 1호에 따른 산림 및 수목을 말 한다. 3. “<u>생활숲</u>”이란 <u>법</u> 제2조제2호 에 따른 산림 및 수목을 말한 다. 4. “<u>가로수</u>”란 <u>법</u> 제2조제3호에 따른 수목을 말한다.

로

다.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4

조에 따른 면도 및 리도

라. 그 밖에 사실상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

3. “도시림”이란 도시에서 시민

의 보건·휴양·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

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

한다.(면 지역과 「자연공원

법」 제2조의 공원구역을 제

외)

4. “생활림”이란 마을숲 등 생활

권 주변지역 및 「초·중등교

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제3조(조성·관리계획의 수립·

시행)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립·시행하는 도시림등

제3조(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

의 수립·시행) ① 예천군수(이

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6조

에 따라 도시숲등 조성·관리계

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

야 한다.

의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 및 방향
2. 기능 구분에 관한 사항
3.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보전·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기능 증진 및 유지에 관한 사항
6. 재해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7. 조성 및 관리에 소요되는 수종 등의 수급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8. 가로수의 지역별·노선별 수종 등 현황 분석
9.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되, 도시림등의 현저한 상황변화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

② 군수는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제4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

의위원회) ① 군수는 법 제20조의2에 따라 도시림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계획 수립 및 변경
2.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의 시책 개발
3. 도시림등의 관련 사업의 계획, 설계
4. (생략)
5. 그 밖에 군수가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생략)

③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업무 관련 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2. 3. (생략)

의위원회) ① ---- 법 제13조제1항----- 도시숲등의 -----

----- 도시숲등-----.

1. 도시숲등-----
2. ----- 도시숲등-----
3. 도시숲등-----
4. (현행과 같음)
5. ----- 도시숲등-----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시숲등-----.

1. 도시숲등-----
2. 3.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산림경영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⑤ ~ ⑧ (생략)

제7조(가로수 조성협의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행정기관 또는 담당 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1. ~ 6. (생략)

② (생략)

제10조(승인 및 원인자 부담금)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관리청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관계법령과 절차에 따라 가로수를 식재·이식·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가로수담당 부서 외에서 시행할 경우에도 가로수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관리청은 승인신청을 받은

④ -----

---- 공원녹지팀장-----
-----.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7조(가로수의 조성·관리) ① 법 제12조-----

-----.

1.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승인 및 원인자 부담금) ① 법 제12조제2항-----

----- 심고 가꾸기·옮겨심기
----- ·제거 -----

-----.

② (현행과 같음)

③ -----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조례, 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관리청은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신 설>

④ ~ ⑦ (생 략)

제14조(가로수 관리대장) 관리청은 가로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노선별로 관리대장을 만들어 전산화 된 대장으로 작성하

--. <후단 삭제> -----

---. 다만, 관리청은 승인신청 내용이 관련 법령, 조례, 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리청은 제3항에 따라 가로수 사업을 승인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원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 ⑧ (현행 제4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제14조(가로수 관리대장) -----

여 관리한다. 이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의한 가로수관리대장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제15조(도시림의 조성 및 관리지역) 법 제2조제4호에 의한 도시림 조성·관리 지역은 예천읍으로 하며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지역(남산공원, <u>흑응산</u> 등) 2.·3. (생략)	----- . 이 경우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가로수 조성·관리대장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제15조(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지역) 도시숲등 조성·관리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u>흑응산</u>, <u>범우리공원</u> --- 2.·3. (현행과 같음)
--	---

예천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4일

예 천 군 수

1. 조례명 : 예천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이 개정(2022. 1. 13. 시행 예정)되어 감사청구 주민 수 기준이 200명 이내에서 150명 이내로 완화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주민감사청구를 활성화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감사청구 관련 「지방자치법」 조항 정비(안 제1조)

○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 → 「지방자치법」 제21조

나. 감사청구 주민 수 기준 변경(안 제2조)

○ 200명 → 150명

4. 개정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기획 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yhee8328@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기획감사실

3) 팩스 : 054-650-605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기획감사실(전화: 054-650-682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 법 예 고 사 항 에 대 한 의 견 서

☐ 조 례 명 : 예천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단 체 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조례 제 호

예천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21조”로 한다.

제2조 중 “200명”을 “150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 법」 제21조----- ----- -----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예천군과 예천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감 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는 <u>200명</u> 으로 한다.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 ----- ----- ----- ----- <u>150명</u> -----.